

【 16 】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7. 10. 27.

제출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양주군이 시행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제정

□ 주요골자

-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, 체비지 폐각대금, 청산징수금,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그 세출에 충당함.(안 제2조)
- 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)
- 특별회계의 사무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함.  
(안 제4조)

양주군 조례 제 호

**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안**

제1조(설치) 양주군이 시행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주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세입과 세출) 특별회계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, 체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징수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.

제3조(경리)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. 다만,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으로 보전할 수 있다.

제4조(준용) 이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第4章 地方財政・地籍

### 第1節 地方財政

#### ●地方財政法<sup>(1988.4.6) 法律第4006號全文改正)</sup>

改正 1990.12.27 法律第4268號(政府組織法)

1991.12.31 法律第4466號

1994.12.22 法律第4795號

1995.1.5 法律第4868號(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)

### 第1章 總 則

**第1條 (目的)**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및 會計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하여 地方財政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第2條 (財政運營의 基本原則)**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財政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, 國家의 政策에 반하거나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貢献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內務部長官은 地方財政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研究·開發하여 施行하여야 한다. <新設 94.12.22>

1. 합리적·효율적인 豈算管理技法

2. 地方財政運營狀況의 測定技法

3. 기타 國家의 實效성있는 地方財政支援方案

**第3條 (會計年度 獨立의 원칙)** ①各 會計年度의 經費는 당해年度의 歲入으로 총당하여야 한다.

②당해年度내의 收入으로 經費를 총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年度의 收入을 앞당기어 이에 총당·사용(이하 “繫上充用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이 경우 繫上充用을 한 금액은 다음 年度의 歲入歲出豫算에 編入하여야 한다.

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繫上充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하며, 繫上充用을 한 때에는 市·郡 및 地方自治團體인 區(이하 “自治區”라 한다)에 있어서는 特別市長·直轄市長 및 道知事(이하 “市·道知事”라 한다)에게, 特別市·直轄市 및 道(이하 “市·道”라 한다)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④歲入과 歲出의 會計年度 소속구분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**第4條 (出納閉鎖期限)** 地方自治團體의 出納은 會計年度 종료후 2月로 閉鎖한다.

**第5條 (會計의 구분)** ①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.

②特別會計는 公營企業 기타 特定事業을 운영할 때 또는 特定資金이나 特定歲入·歲出로서 一般歲入·歲出과 구분하여 經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法律 또는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.

##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·地籍 地方財政法

**第6條 (教育·科學 및 體育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)** 이 法에서 教育·科學 및 體育에 관한 사항 또는 教育費特別會計에 관하여는 “地方自治團體의 長” 또는 “市·道知事”는 “教育監”으로, “內務部長官”은 “教育部長官”으로, “內務部”는 “教育部”로, “地方財政”은 “地方教育財政”으로 각각 본다.

(全文改正 94·12·22)

**第7條 (歲出의 財源)** 地方自治團體의 歲出은 地方債의 歲入을 그 財源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地方自治法 第1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債로 충당할 수 있다.

**第8條 (地方債의 발행)** ①地方債의 발행, 元金의 債還, 利子의 支拂, 證券에 관한 事務節次 및 事務取扱機關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②第1項의 地方債중 證券發行의 방법에 의한 地方債(이하 “地方債證券”이라 한다)의 발행에 관하여는 商法 第479條·第484條·第485條 및 第487條의 規定을準用한다. 이 경우 商法의 規定中 “社債”는 “地方債證券”으로, “社債權者”는 “地方債權者”로, “債券”은 “證券”으로 보고, 第479條中 “記名社債”는 “記名地方債證券”으로, “社債原簿”는 “地方債證券原簿”로, “會社”는 “地方自治團體”로 각각 본다.

**第9條 (地方自治團體組合에 의한 地方債)** 地方自治法 第1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組合이 그 規約에 의하여 당해組合의 構成員인 地方自治團體에 貸付하기 위하여 地方債를 起債하는 경우에 그 起債한 地方債에 대하여는 당해組合과組合의 構成員인 地方自治團體가 그 債還과 利子의 支給에 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.

**第10條 (保證債務負擔行爲)** 地方自治法 第1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債務負擔行爲의 승인과 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**第11條 (一時借入金)**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豈算에 計上된 범위안의 支出을 위하여 一時借入金이 필요한 때에는 그 限度額을 會計年度마다 會計別로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.

②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의 收入으로 債還하여야 한다.

**第11條의2 (地方自治團體의 福券發行等)** ①地方自治團體는 文化·藝術·福祉向上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과 地域開發을 위한 基金의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福券을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종류, 발행 금액, 발행조건을 정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内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福券의 當籤金의 消滅時效는 支給日부터 3月로 하고, 消滅時效가 완성된 當籤金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한다.

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射倖行爲등規制 및 處罰特例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改正 94·12·22>

# 양 주 군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# 군 보

제 63 호

1997년 10월 20일 (월)

## 차 례

## 예 규

- 양주군예규 제 87호 양주군상수도사업장근무지침 ..... 3

## 공 고

- 양주군공고 제1997-107호 준도시지역(봉암취락지구)개발계획변경 ..... 3
- 양주군공고 제1997-372호 자치법규일법예고 ..... 6
- 양주군공고 제1997-377호 국토이용계획변경 공고 ..... 7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양주군

편집 : 문화공보실

## 양 주 군 보

제 63 호

양주군 공고 제1997-372호

## 자치법규일법예고

양주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(안) (또는 개정, 폐지)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7년 10월 8일

양 주 군 수

## 1. 조례제명

양주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(안)

## 2. 제정취지

양주군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.

## 3. 주요골자

- 가.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부담금, 체비지매각대금, 청산징수금, 기타수입을 세입으로하고 그 세출에 충당함.(안 제2조)
- 나. 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의 전입으로 함.(안 제3조)
- 다. 특별회계의 사무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함(안 제4조)

## 4. 세부내용

불임 별첨참조

5. 의견제출 :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를 세워서 작성한것)를 군수(참조 : 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전화 49-1434)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(찬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주소, 전화번호

## 양주군 조례 제 호

##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제1조(설치) 양주군이 시행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주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세입과 세출) 특별회계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, 체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징수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.

제3조(경리)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. 다만, 세입의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.

## 양 주 군 보

제 63 호

제4조(준용) 이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양주군 공고 제1997-377호

## 국토이용계획변경 공고

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(용도지역)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1997년 10월 15일  
양 주 군 수

1. 건 명 :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

2. 주요내용

가. 위 치 :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61번지일원

나. 면 적 : 0.001㏊

다. 변경용도지역

준농림지역 → 준도시지역 (취락지구)

라. 변경사유 : 공동주택(APT) 건립

마. 변경도면 : 실음생략(양주군청 도시과 및 장흥면사무소에 배치)

3. 의견제출

본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군수(양주군청 도시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, 반 여부와 그 이유

나.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(단체인경우 단체명)